



제438회국회(임시회)
제2차 정무위원회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개인정보 유출등의 은폐·축소 또는 거짓 통지에 대한
과태료 부과 〉

■ 이양수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7016호)

2026. 8.

정 무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: 이양수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: 2026. 2. 25.
3. 회 부 일: 2026. 2. 26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“유출 등”이라 한다)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,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일어난 유출 등의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‘개인정보 유출’이라는 용어가 아닌 ‘개인정보 노출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출 등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·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제75조제2항제17호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·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3조의2 및 제66조제1항).

현행	개정안
제75조(과태료) ① (생략)	제7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16. (생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17. 제34조제1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<u>아니한</u> 자	17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니하거나</u> <u>은폐·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린</u> -----
18. ~ 27. (생략)	18. ~ 2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-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,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,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,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¹⁾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각 사실을

알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
있음.²⁾

□ 그런데 최근 일어난 유출등의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‘개인정보
유출’이라는 용어가 아닌 ‘개인정보 노출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의
혼선을 초래한 데 대하여,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노출통지를
유출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재통지하도록
심의·의결한 사례³⁾ 및 누락된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출
통지 이행 촉구 불이행에 대하여 유출통지 의무 위반을 확정 의결한
사례⁴⁾ 등이 있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유출등으로 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·축소 또는

1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제34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·신고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이 조
에서 “유출등”이라 한다)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
항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
2.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
3.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
한 정보
4.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
5.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

2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제75조(과태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7. 제34조제1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
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

3)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통지 경과

- '25.11.29.~30. 쿠팡, 개인정보 “일부 노출” 사고 발생 안내
- '25.12. 3.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쿠팡 대상 개인정보 노출통지를 유출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
빠짐없이 반영하여 재통지할 것을 심의·의결
- '25.12. 7. 쿠팡, 이용자 계정 약 3,300만명 대상 문자메세지로 재통지

자료: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- 4)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쿠팡 및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을 통해
쿠팡의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4조제1항) 위반을 확정하였음.

거짓으로 알리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2차 피해 예방 등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, 개인정보 유출등의 은폐·축소 또는 거짓 통지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·의결에 있어서 기준 제공 및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유출통지 항목을 생략하는 경우 등에는 유출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의견(개인정보보호위원회) 및 사고 초기 조사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재가 우려된다는 의견(한국인터넷기업협회, 한국온라인쇼핑협회)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
02)6788-5108

조사 과정에서 쿠팡은 배송지 관리 페이지를 통해 회원 약 16만명의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'26. 1. 30.경 인지하였음에도, **법령에서 정한 72시간이 경과한 '26. 2. 5.에서야 유출 사실을 통지**하였다. 아울러,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배송지 정보에 쿠팡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(이름, 전화번호, 주소)가 존재하여, 이들에 대한 유출통지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촉구('25.12.3., 12.10., 12.26., '26.1.14.)하였음에도, 쿠팡은 이에 대한 **통지를 이행하지 않았고**, 해당 정보주체는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.

자료: 개인정보보호위원회